

청렴^韓·세상

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구현

2017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지침

2017. 2. 8. (수)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CONTENTS

I. 우리의 청렴수준	1
1. 국제사회가 평가한 우리의 청렴수준	3
2. 공공기관 청렴도 및 국내의 부패인식	5
II. 청렴정책 추진방향	7
1. 반부패·청렴정책 환경	9
2. 2017년도 중점 추진방향	11
III. 2017년도 중점 추진과제	13
1. 반부패 인프라 공고화	15
2. 법·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21
3. 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적 개선노력 지원 확대	27
4.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30
5. 청렴 거버넌스 구축으로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 확산	35
6.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이첩사건 관리 강화	42
7. 신고자 불이익 조치 예방 강화 및 보·포상금 지급 확대	46
8.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53
[붙임 자료]	57

2017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I. 우리의 청렴수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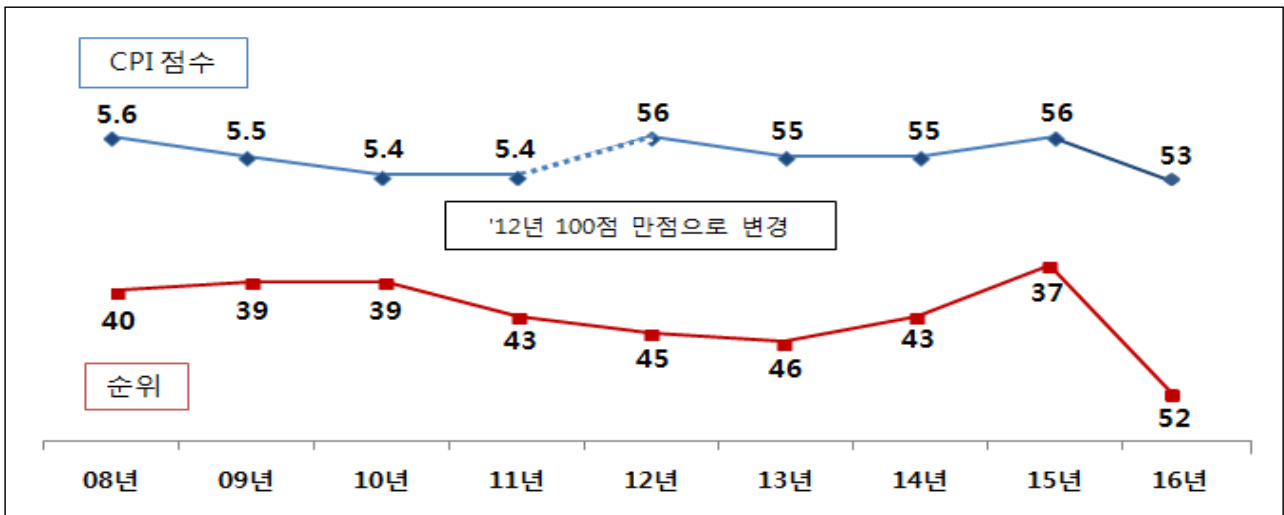
국제사회가 평가한 우리의 청렴수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6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76개국 중에서 52위

○ '15년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국가순위와 점수 모두 크게 하락

※ CPI 점수 3점 하락, 국가순위 15위 하락

< 우리나라 CPI 변동 추이 >



○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5개국 중 29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였으며, 점수는 OECD 평균(68.6점)에 비해 15.6점 낮음

- OECD 국가 중에서는 덴마크·뉴질랜드가 1위, 핀란드가 3위를 차지하였고, 이탈리아·그리스·터키 등은 우리보다 순위가 낮음

< OECD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구분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2016	1위 (90점)	1 (90)	3 (89)	10 (81)	18 (74)	23 (69)	29 (62)	41 (58)	52위 (53점)	60 (47)	69 (44)
2015	1위 (91점)	4 (88)	2 (90)	10 (81)	16 (76)	23 (70)	30 (62)	36 (58)	37위 (56점)	61 (44)	58 (46)

□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16년도 국가경쟁력지수는 전년보다 4단계 하락한 29위

- 부패 관련 평가항목인 뇌물공여·부패비리도 전년보다 2단계 하락, 정부 투명성은 3단계 하락

< IMD 국가경쟁력지수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가경쟁력 순위	22/59	22/59	22/60	26/60	25/61	29/61	↓ 4
뇌물공여와 부패비리	30	32	28	31	32	34	↓ 2
정부의 투명성	26	29	29	33	40	43	↓ 3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16년도 국가경쟁력 지수는 전년과 동일한 26위

- 그러나, 부패 관련 평가항목 중 '공공자금의 유용',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 항목은 전년 대비 하락
- '정부 정책수립의 투명성' 항목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138개 평가대상국가 중 115위로 여전히 최하위권

< WEF 국가경쟁력지수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가경쟁력 순위	24/142	19/144	25/148	26/144	26/140	26/138	-
정부 정책수립의 투명성	128	133	137	133	123	115	↑ 10
공공자금의 유용	58	58	62	67	66	69	↓ 3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	49	50	57	52	46	52	↓ 6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al Risk Consultancy)의 '16년도 국가부패지수는 아시아 16개 국가 중 8위로 1계단 상승

< PERC 부패지수 연도별 변동 추이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점수	5.90	6.90	6.98	7.05	6.28	6.17
순위/전체대상국	9/16	11/16	10/17	9/16	9/16	8/16

(0~10점 :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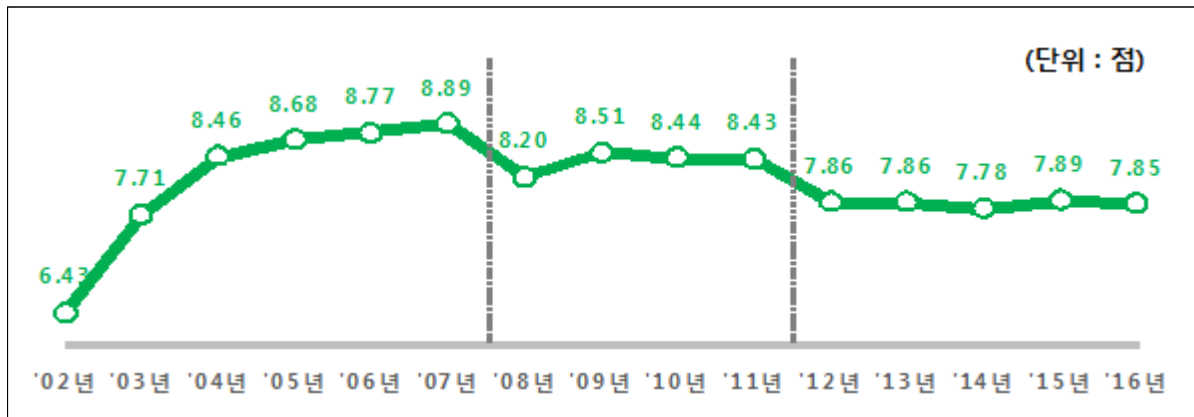
2

공공기관 청렴도 및 국내의 부패인식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국민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청렴 수준은 최근 몇 년간 답보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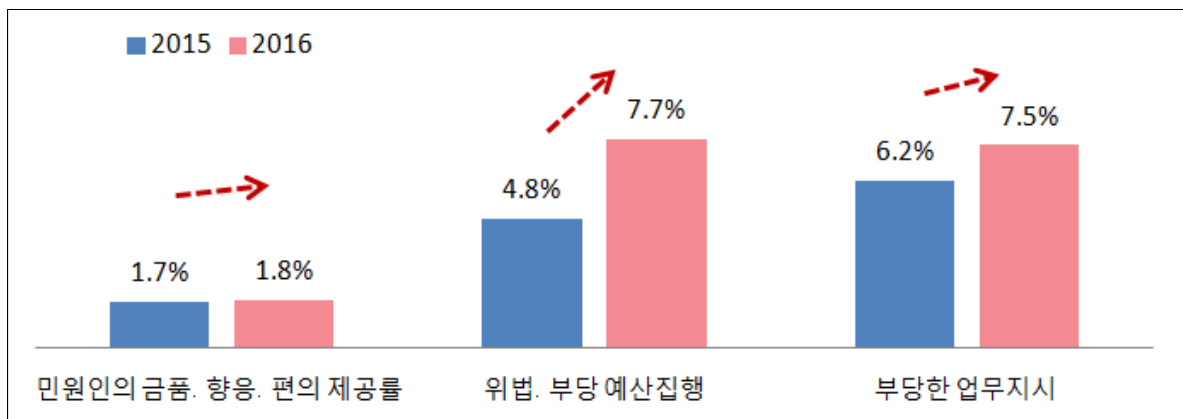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 추이('02~'16년) >



(* '08년~'12년은 모형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와 시계열 단절)

- '16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금품제공,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 등 부패경험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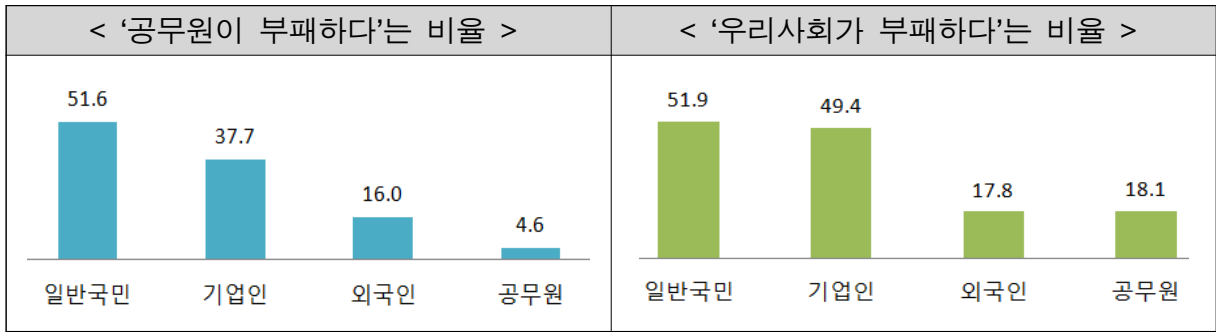
< 부패경험 응답률 결과 비교('15~'16년) >



- 전년대비 외부청렴도(8.02→8.04) 및 정책고객 평가(7.08→7.20)는 상승했으나, 소속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8.00→7.82)는 크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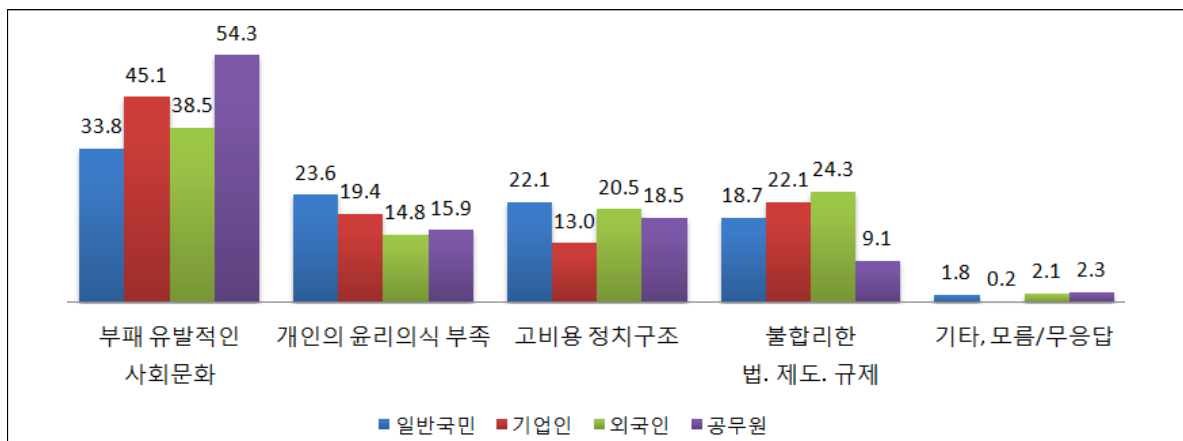
□ **국민의 부패인식·경험 조사 결과**(’16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공직사회 부패수준) 일반국민 51.6%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는 4.6%만이 부패하다고 응답하여 인식차가 매우 큼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 일반국민(53.6%), 기업인(61.0%), 공무원(55.3%)은 ‘실제’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응답
-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일반국민, 기업인 등은 11개 사회분야 중 ‘정당·입법’이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한 반면, 공무원은 ‘언론’이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
- (부패발생 원인) 일반국민(33.8%), 기업인(45.1%), 외국인(38.5%) 공무원(46.1%), 모두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음

< 부패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대상별 응답률 >



- (부패원인 제공자) 정치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두 번째 부패원인 제공자로 일반국민(28.1%), 기업인(29.9%), 외국인(23.5%) 모두 고위공직자를 지목



Ⅱ. 청렴정책 추진방향



1

반부패·청렴정책 환경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

- 국정을 더욱 바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17.1.2, 정부 시무식)
- 한국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척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이 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17.1.11, 국민안전 및 법질서 분야 업무보고)

- 우리나라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급락하는 등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
 - 지속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원인 분석을 통해 근원적인 개선책 마련
 - 반부패 국제 공조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 대형 부패사건 발생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관행화된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반부패 개혁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반부패 실천전략을 제시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
 -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의식개혁 노력을 적극 전개하여 공직사회 청렴성을 재무장
- 대선 등 최근 정치 이슈와 맞물려 범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반부패 정책 추진동력 약화 우려

- 국민 지지와 참여에 기반한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국민공감대 형성 및 정책의 실효성 확보
 - 정부의 반부패 정책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반부패 정책 추진
-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패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시급
-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진단·평가를 통해 부패위험요인에 대한 전략적 대응 강화
 - 각급 공공기관의 선제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유도하고 더욱 엄격한 공직자 행위기준을 정립
- 「청탁금지법」 등 새로운 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는 일반 국민들의 기대감 증대
- 반부패 거버넌스를 활용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정부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
 - 시민단체, 기업, 지역사회 등 사회 각 부문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제도 도입의 효과성 극대화
-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 문화를 청산하고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청렴문화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요구 증대
- 민간의 자율적인 반부패 실천 활동을 적극 유도하여 민간분야 청렴인프라 구축을 지원
 - 사회 전반에 국민이 공감하는 선진 청렴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청렴'을 사회적 핵심가치로 정착

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구현

중점 추진과제

- ◆ 반부패 인프라 공고화
- ◆ 법·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 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적 개선노력 지원 확대
- ◆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 ◆ 청렴 거버넌스 구축으로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 확산
-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이첩사건 관리 강화
- ◆ 신고자 불이익 조치 예방 강화 및 보·포상금 지급 확대

추진 전략

- ▶ 새로운 법·제도의 안착을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
- ▶ 맞춤형 지원 강화로 공공·민간분야 청렴 실천력 제고
- ▶ 사전·사후적 반부패 정책 연계로 부패통제의 사각지대 해소



Ⅲ. 2017년도 중점 추진과제



1

반부패 인프라 공고화

- ◇ 반부패 법령·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면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반부패 시스템 확립
-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공직자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위 기준을 강화하고 부패통제의 사각지대 해소

가. 청렴정책 추진동력으로서 「청탁금지법」 정착

□ 「청탁금지법」 운영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협력 확대

○ 청탁방지담당관 역량 제고

- 기관 유형별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전담 헬프데스크(Help Desk) 운영으로 법령 문의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 및 안내 수행
- 기관 유형별(행정기관/공직유관/언론사)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워크숍 개최 및 집중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제고

○ 제도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신고 접수·처리, 소속공직자 교육, 소관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및 안내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공공기관 유형별 우수 운영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수범사례 확산

○ 구조적 개선필요사항 발굴 및 대책 마련

- 법·제도 상 근원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를 발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개선

□ 「청탁금지법」 내면화를 위한 교육 강화

○ 각급 공공기관의 자체교육 지원 확대

- 강사 및 교육자료를 적극 지원하고,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과정에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협의 추진

※ 청렴연수원에서 양성하는 우수 청렴교육 강사를 활용하여 기관별 자체 교육의 전문성 제고

○ 빈발 질의 및 쟁점사항 등에 대해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적용대상자 이해도 제고

※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질의회시집과 법 내용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핸드 가이드북 제작·배포, 법 해설서 및 매뉴얼 현행화 등

□ 전방위적 홍보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실천 유도

○ FAQ·법 준수 행동수칙 등을 포함한 카드뉴스 배포, 홍보 동영상 제공 등 온라인 홍보 실시(연중)

○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콘텐츠(포스터, 리플렛, 동영상 등) 제작·활용(상/하반기)

- 「청탁금지법」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창의적 콘텐츠 발굴·배포

○ 시민사회와의 반부패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사회 전반으로 선진 청렴문화 확산 유도

- 설·추석 명절, 법 시행 1년 등 주요 계기별 법 시행의 효과 및 변화 모습에 대한 홍보 전개

[협조 요청 사항]

- 각급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참석(전 공공기관, 상·하반기)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언론사 등 공공기관 유형별 실시
 - ※ 별도 공문시행 예정

- 유권해석 요청 및 상담 창구 이용 협조(전 공공기관)
 - 해당 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권익위 '청탁금지 해석과'로 해석 요청
 - 유선상담은 기관 유형별 전담 헬프데스크(Help Desk)에 문의
 - ※ 기관 유형별 전담 헬프데스크(전담 상담관) 연락처는 [붙임 2]의 '분야별 업무담당자'(68쪽) 참조

- 소속 공직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전 공공기관, ~10월)
 - 청탁금지법 교육교재 및 강의안을 활용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 실시

- 청탁금지법 운영 현황 실태조사 협조(전 공공기관, 상·하반기)
 - 신고 접수·처리, 교육, 소관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및 안내 등에 대한 실태조사시(서면·현장) 자료 제출 협조
 - ※ 별도 공문시행 예정

나. 실천규범으로서 공직자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 추진

- 부정청탁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통제장치 마련
- 부패예방의 핵심요건인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규정을 도입하여 행동강령의 규율범위 확장

< 주요 개정사항(예시) >

- ◆ 공무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 제척·기피·회피, 직무중지·대리, 등록·공시 등 이해관계 직무처리 절차 체계화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테마별·이슈별 행동강령 실태점검 강화

- 언론·국회 등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거나 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전략적 점검 실시
- 유착·특혜 등 행동강령 위반 개연성이 높거나, 예산낭비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분야에 대한 점검 강화

< 행동강령 이행실태 중점점검 분야(예시) >

- ◆ 복지·산업·연구개발 등 분야 국고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 ◆ 국제학교 입학 관련 특혜 제공 및 이권개입
- ◆ 농업기술센터·문화예술회관 등 지자체 독립사업소의 특정업체 선정 청탁
- ◆ 점검빈도가 낮았던 중앙행정기관 대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점검

□ **각급 공공기관의 행동강령 운영 지원**

- '17년도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을 지원
- **각급 기관 행동강령 제·개정 심사 및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 심사결과 통보 및 시정 요구, 행동강령 질의회시 및 강의 지원

[협조 요청 사항]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 사항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반영(제·개정 즉시, 전 공공기관)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시 자료제출·현장점검 등 협조 (해당 공공기관, 연중)
- '17년 신규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참석
※ 해당 공직유관단체 별도 통보(3월, 9월 개최 예정)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시 권익위에 통보(전 공공기관, 연중)
- 행동강령 운영 관련 권익위에 상담·협의 등 요청(전 공공기관, 연중)

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도 확립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정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시행 7년차를 맞아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 촉진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지방의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 운영지침 주요 내용(예시) >

- ◆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및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 상한
- ◆ 이해관계 직무 회피 기준, 금품등 수수의 신고 및 처리방법
-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 의장이 접수한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처리절차 등

□ 의회별 특성에 적합한 행동강령 조례 제정 맞춤형 컨설팅 실시

- 능동적인 조례 제정 동기 부여 및 행동강령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동강령 조례 미제정 의회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대상 의회의 업무 프로세스, 행동강령 제도, 의정활동 행태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분석하여 실질적인 조례 제정 설계 지원
- 컨설팅 희망의사 및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20개 내외의 대상 의회 선정

[협조 요청 사항]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정 사항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반영(제정 즉시, 지방의회)
 - ※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토론회, 실무간담회, 설문조사, 기타 협조사항 등)시 적극 참여(연중)
-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 제정 컨설팅 수요 제출(해당의회, 7월)
 - ※ 별도 공문시행 예정

2

법·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 3대 부패취약분야(△청탁관행, △예산낭비, △권한남용)의 법·제도를 개선하여 부패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
- ◇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정부 반부패 노력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가.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 청탁관행 근절을 위한 집중적인 제도개선 추진

-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패취약분야를 집중 발굴·개선하여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
 - ※ 각종 국가 자격시험, 공인시험·인증, 공공계약 등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요인 발굴·제거

□ 예산낭비 및 권한남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 행정제도의 허점, 과도한 중복지원 등을 개선하여 예산낭비·누수를 근원적으로 차단
 - ※ 도로 등 공공시설 파손 복구비용, 각종 재정지원 및 부담금 운영 등과 관련된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등
- 관리감독, 행위기준 등의 미흡으로 권한을 남용한 사익 추구행위가 발생하거나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취약분야 발굴·개선
 - ※ 관리감독 사각지대의 공공기관 운영, 교육 등 국민생활 밀착분야에서의 불합리한 국민부담 가중 행위 등

□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및 효과성 제고

-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간담회 개최 또는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국민의견 적극 수렴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다수 국민의 생각을 모아 정부정책·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하는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운영

-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 해당 제도의 이해관계 국민, 담당 공직자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 수시 개최

- 주요 권고사항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뿐만 아니라 언론 인터뷰, 칼럼·기고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적·전략적으로 홍보

※ 필요시 관계 기관과 공동 홍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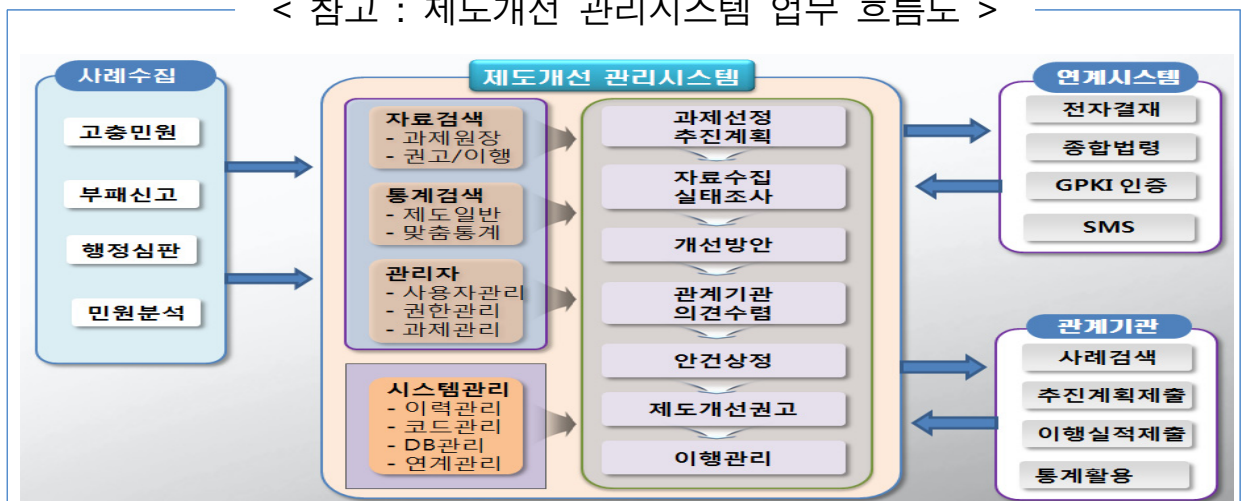
□ 권고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권고과제 이행실태 점검 강화

- [과제발굴] → [실태조사] → [관계 기관 등 의견조회] → [권고] →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연계·지원하는 관리시스템 구축

※ 피권고기관에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기관별 권고사항을 확인하고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 실시간 입력

< 참고 :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업무 흐름도 >



- 권고과제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 이행이 저조하거나, 이행에 곤란을 겪는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추진 지원
-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14.4월 권고) 이행실태 조사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기관 외 공공기관의 해당 과제 이행 실태 조사 추진
 - ※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현장방문 조사 실시('17년 2월 중 해당 공공기관에 공문 시행 예정)

[협조 요청 사항]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등 기한내 제출(전 공공기관)
 - 추진계획서 제출 : 권고 후 1개월 내(붙임 별지 제1호 서식)
 - 이행실적 제출 :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내(붙임 별지 제2호 서식)
 - ※ 조치기한 도래 전이라도 신속한 이행 협조
-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사용 협조(전 공공기관)
 - 기관별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사용자 신청(기관별 1~2인)
 -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을 통한 추진계획서, 이행실적 등 제출
 - ※ 시스템 본격 운영 후 사용자 신청, 사용 방법 등 별도 안내 예정(3~4월)
- 이행실적 미흡기관 컨설팅 수요 제출(해당 공공기관)
 - 부패방지 시책평가 저조기관 중 컨설팅 희망기관은 공문 제출(5월)
 - ※ 컨설팅 신청에 대한 구체적 안내는 별도 공문 시행 예정(4월)
- 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업무과정에 적극 협조(전 공공기관)
 -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실태 조사·점검 시 협조
 - ※ 우수 협조기관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 추천

나.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발굴·정비

□ 재정 건전성 저해 분야 현행 법령 개선

-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 예산낭비, 재정누수 등이 빈발하는 분야를 중점 발굴하여 관련 법령 개선 추진
- 각종 보조금,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등 국가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회계집행, 사후정산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개선

< 관련 사례(예시) >

- ◆ 농업법인 보조금 누수 : 허위 농업법인 설립을 통한 보조금 편취, 운영 범위를 일탈하여 농지투기 등 목적외 사업 수행, 관리·감독 미흡 등
※ 총 52,293개 농업법인 중 미운영 35%, 소재불명 17%('16년 농림부 실태조사)
- ◆ 주민지원사업 부실 : 사업선정 기준·과정 미흡,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집단 재정특혜 부여, 정산 및 관리감독 미비로 재정 누수 등

□ 제·개정 법령 및 조례·사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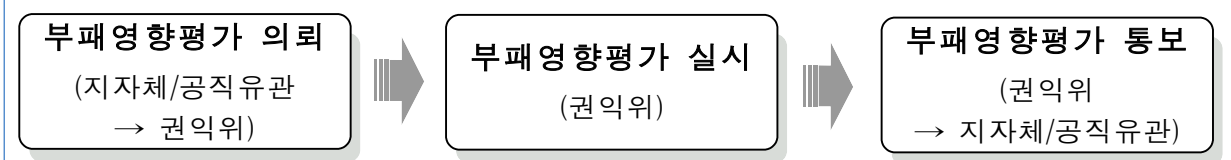
-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시 방산비리, 유해식품·물질 등 시의성 있고 국민생활 밀접 분야 중점 심층평가 실시

※ 제정 법률의 경우 해당기관 요청 시 입안단계에서 해당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전 부패영향평가 실시 가능

- 조례·사규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를 권익위에 의뢰한 경우 해당 조례·사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 관련 서식 등은 「2016 부패영향평가지침」 참조

< 조례·사규 부패영향평가 의뢰 및 통보 절차 >



□ 부패영향평가 권고 사항 이행점검 및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서면) 및 현장방문 조사 추진

※ 현장방문 조사는 이행률이 저조한 부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각 기관에 통보하여 이행 제고토록 협조 요청

- '16년도 사규 부패영향평가 대상 기관 이행점검 실시(상·하반기)

-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고, 필요 시 보고대회 개최 추진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소상공인진흥공단 등 5개 기관

-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추진

-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 위주로 부패영향평가 컨설팅을 실시 함으로써 자체 평가역량을 강화

※ 기관별 수요조사 후 컨설팅 실시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

[협조 요청 사항]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업무수행 시 자료제출 등 협조 (해당 공공기관)

- 보조사업, 출연금,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한 현황자료 제출 및 현장 실태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

[협조 요청 사항]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 소관 법령 제·개정 시 입법예고와 동시에 부패영향평가 통보
(중앙행정기관)
 - 제정 법률의 경우 필요시 입안단계에서 권익위에 사전 부패영향평가 의뢰 및 협업을 통한 평가 가능
- 제·개정 조례·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권익위로 부패영향평가 의뢰(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이행점검]

- 부패영향평가 컨설팅을 위한 자료 제출 협조(지자체, 공직유관단체)
 - '16년 기준 조례·사규 등 제·개정 현황, 평가기준별 검토 현황(개선권고, 원안동의 등) 자료 등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 이행점검 협조
(해당 공공기관)
 - 제·개정 법령('13~'16년) 및 현행 법령('13~'15년) 권고사항 이행 여부, 미이행 사유, 향후 계획 등
 - 사규 부패영향평가 협업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소상공인진흥공단) 이행점검 협조

3

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적 개선노력 지원 확대

-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기관별 청렴수준 진단·환류를 강화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 유도
- ◇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청렴도 미흡기관의 반부패 추진 역량 제고를 지원

가. 공공기관에 대한 반부패 진단·평가 강화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체계 고도화

- 청렴도 측정대상자 범위 확대, 설문항목 보완 등을 통해 측정 결과의 타당성·신뢰성 제고
 - 부정청탁과 관련된 부패경험 설문항목을 추가(청탁여부, 빈도 등) 하여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의 현황에 대한 진단 실시
 - 외국인을 외교부, 공적자금 운용기관, 에너지 공기업 등 국제 거래업무 관련 기관의 외부청렴도 설문 대상자에 포함
- 신뢰도 저해행위 및 청렴도 측정 결과의 기관별 홈페이지 공개 실적에 대한 점검 강화
 - 자체청렴도 결과를 성과급 등 내부평가와 연계하여 오염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기관의 측정 명부 체계적 점검
 - 측정대상 공공기관에서는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후 2주 이내에 1개월 이상 공개하고, 위원회는 공개위치·공개기간 등 점검

□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 개선 및 대상기관 확대

- 청렴정책 추진 여건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 추진
 - (기본방향) 기관별 자체 계획수립과 취약분야 제도개선에 중점
 - ※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이 가능한 우수 시책사례 발굴·전파
 - (검토)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 제도운영, 부패·공익신고행위 신고 활성화, 청렴교육 의무화 관련 사항 등
- 청렴도 측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평가 대상기관 확대
 - (대상) 현재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청렴도 측정 5등급 기관(23개 기관, 별도 통지) 포함
 - (방식) 시책평가 우수기관과 1:1 매칭을 통한 청렴 실천 모범사례 확산, 각급 기관의 반부패 활동 추진 노력 지원

[협조 요청 사항]

- '16년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은 3.17(금) 까지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실적 제출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실무담당자 워크숍 참석(3월, 별도공문 시행 예정)
-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통보(3월)에 따른 자료 및 의견제출
-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통보(6월)에 따른 대상명부 등 제출
- '1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담당자 해외 반부패 교육 훈련 참가(5월)
 - ※ 교육훈련 대상자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공문 시행 예정
- '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관별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서 제출 (4월말, 10월말)

나. 청렴컨설팅을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 반부패 역량 강화 및 청렴수준 제고를 희망하는 기관과 권익위 간 협업을 통해 해당 기관의 부패유발요인 진단 및 개선 추진
 - 청렴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의 자발적 신청 또는 최근 청렴도가 연속 하위권인 기관에 대한 참여 권유를 통해 대상기관 선정(2월)
 - 최근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낮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해당 기관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반부패 역량 진단을 통한 컨설팅 실시 및 실천계획 수립·시행
 - 컨설팅 대상기관의 업무, 제도, 행태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반부패 추진역량 진단 실시(3~6월)
 - 권익위-대상기관-민간전문가 간 협업을 통해 기관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도출(4~7월)
 - 해당 기관에서는 자율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권익위와 컨설팅 대상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컨설팅 정책협의회 개최(하반기)

[협조 요청 사항]

- 청렴컨설팅 신청서 제출(2.10까지, '16년 청렴도 측정기관)
- 반부패 추진역량 진단과 대안 마련 등 컨설팅 과정에 적극 협조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 기관장·부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컨설팅 정책협의회 개최 협조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4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 ◇ 기관 간 협업에 기반한 청렴교육 인프라 구축, 우수 청렴교육강사 양성 등을 통해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
- ◇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다변화하여 참여·실천 중심의 청렴교육 추진

가.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에 따른 지원·협력체계 확립

□ 기관 간 협업으로 효율적 청렴교육 토대 구축

- 청렴연수원 - 각급 공공기관 -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으로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이행 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
- 신규 사이버 코스웨어, 영상자료 등 각종 청렴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적극 배포
 -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등 신규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보급, 다큐멘터리 형식의 청렴교육 영상물(30분 분량) 제작·배포

< 청렴교육 지원·협력체계 구상도 >



* 「2017년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인사혁신처)」 상의 핵심 국정과제 교육에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 관련 사항 반영 완료

□ 청렴교육 추진 실적 점검 및 각종 기관평가 반영 추진

- 모든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이수가 의무화된 만큼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

※ 2016년도 기관별 청렴교육 추진 실적은 2월말까지 제출, 기관별 실적에 대한 서면점검 실시(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각종 기관평가에 청렴교육 운영 실적 반영 추진

-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내실있는 청렴교육 운영을 유도하고 운영 실적의 활용도 제고

※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 기획재정부(공공기관 경영평가),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교육부(시·도교육청 평가)

[협조 요청 사항]

- 사이버 코스웨어 등 청렴교육 콘텐츠 활용(전 공공기관)

- 청렴연수원 자체 개발 청렴콘텐츠는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공개, 사이버 학습 코스웨어는 공문으로 요청

※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 정부3.0 정보공개 강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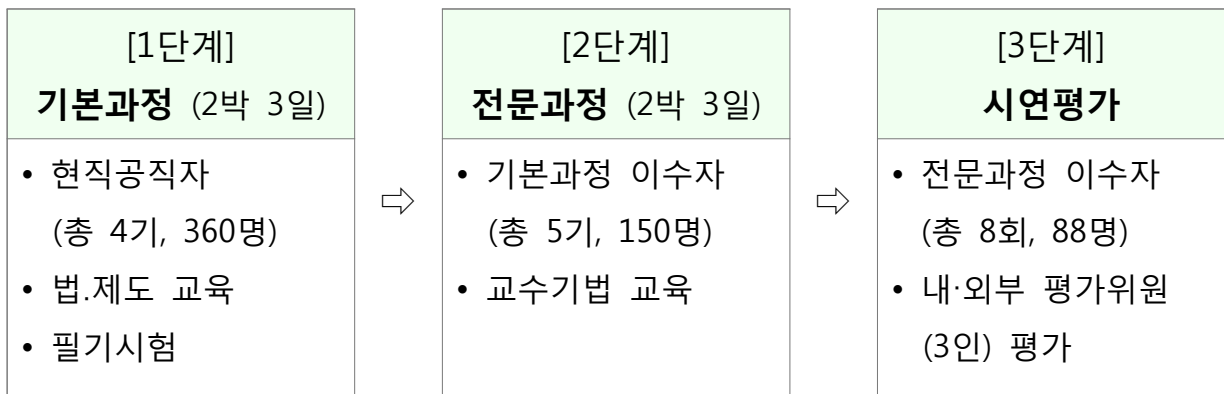
- '16년도 청렴교육 실적 및 '17년도 교육운영계획을 '17.2.28.까지 공문으로(수신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제출 협조(전 공공기관)

- 청렴교육 운영 실적의 기관평가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국조실, 기재부, 행자부,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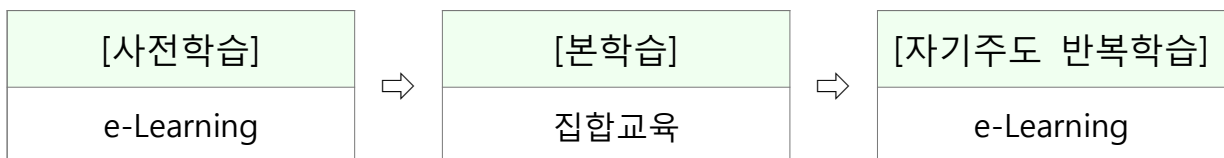
나. 청렴교육 내실화로 공직자 청렴역량 강화

□ 우수 청렴교육강사 양성

- 현직공직자, 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청렴강사 양성을 위한 단계적 전문교육 실시
 - 기본과정·전문과정·시연평가 등 3단계 이수과정 운영, 최종 이수자에 대해서는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전문강사로 등록



- 반부패 관련 다양한 법·제도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e-러닝과 집합교육의 연계 강화



- 「청렴교육 강의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강사 및 강의기법 발굴·확산
 - 법·제도 분야와 청렴 소양분야로 구분하여 시범 개최, 청렴교육 강사의 자발적 역량 개발을 촉진하는 선 순환구조 확립

□ 외부 청렴교육강사 인력풀 확충 및 관리 강화

-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 등 외부 청렴교육강사 인력풀을 청렴연수원 홈페이지(www.acrc.go.kr/edu)에 공개 중
 - 반부패 법령·제도 중심의 전문강사 및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소양강사 등록·공개, 인력풀 상시 확충
 - 주요 경력, 강의 실적, 연락처 등 상세 프로필 다운로드 가능
 - ※ 홈페이지 메인화면 → 정부3.0 정보공개 강의실 → 청렴교육 강사정보
- 강사 검색기능 마련,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강사 개인별 실적관리 등 외부 청렴교육강사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프로세스 도입

□ 공직자 청렴교육 기반구축 강화

-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의무화 규정 및 교육운영지침 등에 따른 교육과정 구성, 청렴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적 교육기반 구축 지원
 - 공직자의 청렴실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청렴역량 향상과정'을 개설하고 기본·심화과정으로 구분 운영(총 9회, 600명)

< '17년도 청렴연수원 테마별 청렴교육 >

맞춤형 교육		청렴역량 향상
청렴교육강사 및 교사대상	청렴교육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대상 청렴직무연수 과정 ▶ 청렴교육 강사양성 과정 (기본·전문·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직 과정 ▶ 승진자 과정 ▶ 신규자 과정 ▶ 부패취약분야(인사·회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심화과정

※ 총 7개 과정, 63회, 3,868명

-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 도모를 위한 교과목 편성 확대
 - ‘청탁금지법 Talk’ 등 문제·사례에 기반을 둔 청탁금지법 교과목 개발, 모든 청렴 집합교육과정에 청탁금지법 교과목 필수 배정

[협조 요청 사항]

- ‘청렴교육 강사양성과정’ 교육신청(전 공공기관)
 -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청렴 관련 업무 유경험자 중 강의능력이 있는 공직자를 교육대상자로 선정
 - ※ ‘청렴교육 강사양성과정’ 안내 및 교육생 모집은 공문으로 별도 통보
- 청렴교육강사를 활용한 기관별 자체 청렴교육 운영 협조(전 공공기관)
 - 청렴교육강사 또는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이수한 소속 직원을 활용
- ‘청렴교육 강의경연대회’ 참여 협조(전 공공기관)
 - 대회 수상 등 우수 성과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추진
 - ※ 청렴교육 강의경연대회의 세부 운영계획은 추후 별도 통보
- 소속 직원에 대한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공지 요청(전 공공기관)
 - 공공기관 내 소속기관, 지사,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렴연수원의 집합교육 일정 및 절차 등을 적극 공지
 - ※ 청렴연수원 청렴집합교육 운영계획은 2월 초까지 확정, 공문·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 청렴연수원 청렴집합교육 수요조사는 보통 2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며 2월·4월·6월·8월·10월 초에 공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5

청렴 거버넌스 구축으로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 확산

- ◇ 지역사회, 기업, 시민사회 등과 함께하는 청렴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사회 전 부문에 투명·신뢰 문화 확산
- ◇ 반부패 국제 공조를 강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 개선

가. 지역·시민사회와 반부패 네트워크 활성화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및 지역 반부패 민·관 네트워크 내실화
 - 청렴시민감사관과 업무 담당자 상호 소통·협력 및 교육 등을 확대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행정 투명성 강화 유도
 -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우수 사례 발굴·공유
 - 공기업 및 협력사, 시민단체,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하는 지역단위 반부패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로 자율적 청렴실천운동 토대 마련
- 권익위 - 혁신도시 이전기관 간 청렴 클러스터 구축 확산
 - 경남, 제주, 울산, 전북, 경북 등 5개 혁신도시별 반부패·청렴정책 협의체 구성(3월~)
 - ※ '16년도에는 광주전남, 부산, 대구, 강원, 충북 등 5개 혁신도시에서 청렴 클러스터 구축 기 완료
 - 전국 10개 혁신도시 '청렴 클러스터'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 워크숍 개최 추진(11월)

- 실무회의 개최 및 수시 정보교환을 통해 반부패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협업 강화
 - (권익위) 청렴교육 강사 지원,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자문 등 반부패 시책 추진 시 우선 지원
 - (공공기관) 부패방지 제도개선 과제 발굴, 취약분야 실태조사, 우수 사례 기관간 공유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 상시적인 협조

- 반부패·청렴 문화행사 공동 개최(연중)
 - 지역별 반부패·청렴문화제 개최를 지원하고, 'UN 반부패의 날 (12.9.)' 기념 캠페인 등 전국 단위 반부패 행사 공동 추진

[협조 요청 사항]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내실화 노력(전 공공기관)
 - 온라인 커뮤니티(청렴시민감사관 인터넷 카페)에 우수사례 공유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 청렴시민감사관 정보교류마당 (<http://cafe.daum.net/acrc-ombudsclub>)

- 지역 반부패 민·관 네트워크 구축 협조(전 공공기관)

- '청렴 클러스터' 구축·운영 협조(혁신도시 이전기관,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및 교육청)
 - 혁신도시별 청렴정책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
 - 지역 기반 반부패 문화행사, UN 지정 '세계 반부패의 날' 기념 캠페인 등 동참
 - ※ '17년도 청렴 클러스터 추진계획 별도 공문 시행 예정(2월)

나. 기업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 지원

□ '기업 반부패 가이드' 확산

- 권익위 기업 윤리경영 사내 전문가 양성과정, 기업윤리 방문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 반부패 가이드' 교육 지원
 -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협업으로 기업윤리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가이드 소개 및 교육 추진
-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내 반부패 조직 및 제도 현황, 부패예방 노력 수준 등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1:1 맞춤형 지원 실시**

□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실천 유도

- '기업윤리의 날(6.2)' 및 '기업윤리 주간'과 연계한 청렴문화 실천 운동 전개
- '기업윤리 브리프스' 및 '기업윤리 e-러닝센터' 등을 활용하여 기업내 청렴·윤리경영 업무담당자를 위한 실무형 콘텐츠 발굴·보급

[협조 요청 사항]

- 협력사, 계약 상대방 등 유관 민간기업 대상 '기업 반부패 가이드' 안내 및 활용 독려(전 공공기관)
 -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방지] - [부패방지 자료] - [반부패정책] 공지(기업 반부패 가이드) 첨부파일 참고
- 기업윤리의 날 행사 등 청렴문화 실천운동 적극 참여(전 공공기관)
- 사내 교육시 '기업윤리 브리프스' 및 '기업윤리 e-러닝센터' 제공 콘텐츠 활용(공직유관단체)
 -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배너 [기업윤리 브리프스]

다. 반부패 국제 공조 동참 및 국제 홍보

□ 반부패라운드 대응 및 대외협력사업 내실화

- UN 반부패협약 2주기 심사('16년~'21년) 및 OECD 뇌물방지협약 4단계 심사,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등 국제공조에 동참
 - ※ UN반부패협약 : 솔로몬제도 대상 서면심사(2월) 및 방문실사(3.20~24)
- 외국공무원 대상 청렴교육과정 개설·운영(제5차, '17.4.17~4.26) 및 외국 반부패기관과 MOU 이행사업 지속 추진
 - ※ MOU 체결 외국 반부패기관 : 인도네시아 부방위('06년~), 베트남 중앙내무위('10년~), 몽골 부방위('10년~)
- 반부패 국제회의 국내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 제고

< '17년 국내 개최 반부패 국제회의 >

- ▶ 회의명 : 제22차 ADB/OECD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회의 및 컨퍼런스
- ▶ 일시/장소 : '17.11.14(화) ~ 11.16(목) / 서울
- ▶ 참석 : 31개 회원국 반부패기관 대표, 국제기구 등 국내외 총 300명
- ▶ 목적 : 아태지역내 반부패 정책·경험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

□ 반부패 노력·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 국내·외 반부패 정책 관련자 및 주한 외국기업인 대상 맞춤형 홍보 콘텐츠 발굴 등 우리 정부 반부패 노력 적극 홍보
 - ※ 주한 외국기업 CEO 간담회 개최(3월), E-mail 뉴스레터 발송(분기) 등
- 반부패 국제기구·기관 홈페이지의 한국정보 오류 수정 등 '청렴 한국 바로 알리기' 지속 추진

[협조 요청 사항]

-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11.14~16, 서울) 참여(전 공공기관)
- UN반부패협약 이행심사,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관계부처 회의 참석 협조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행자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 외국공무원 대상 반부패 관련 강의 및 관계기관 방문 시 협조
(법무부, 대검찰청, 인사혁신처, 조달청, 관세청, 청렴도 측정 우수기관)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교육 프로그램 참여 협조(전 공공기관)
※ 반부패 국제교육기관인 IACA 홍보 차원으로, 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의무사항이 아님
- 국제사회 홍보용 기관별 반부패 우수시책 제공 협조(전 공공기관)

참고	국제반부패아카데미 (IACA) 교육프로그램 안내
-----------	-----------------------------------

< 국제반부패아카데미 개요 >

- '10.10월 개관한 반부패 교육 전담 국제기구로서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 소재
- 부패방지 업무 전문화, 반부패 연구·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우수사례 개발 및 공유, 부패방지 업무 및 부패사건 수사의 효율성 제고 목적

□ '17년도 정규 프로그램(Standardized Programme)

No	프로그램명	주 제	교육기간	신청기간	비 고
1	반부패 석사과정	반부패 분야 전반	'17.10.2 ~ '19.12월(2년)	~ 5.31	학위과정
2	국제 반부패 여름아카데미	반부패 분야 전반	6.30 ~ 7.7 (8일)	~ 3.20	권익위 직원 '11~'12년 참가
	아시아 지역 여름아카데미		9월	추후 공고	신규
3	지방반부패 훈련	지방정부의 반부패 문제	7.10 ~ 7.14 (5일)	3월경 예상	
4	조달분야 반부패 훈련	조달분야 부패예방 및 척결	7.17 ~ 8.18 (5주)	3월경 예상	1주간만 캠퍼스 교육, 나머지는 원격교육
5	Best of 시리즈	Best of Luis Moreno Ocampo seminar	7월경 예상 (2일)	3월경 예상	저명 교수/전문가 특강

※ 자세한 내용은 IACA 홈페이지(www.iaca.int) 'Master Program' 및 'Open Trainings' 참조

□ 기관 맞춤형 프로그램(Tailor-made Programme)

부패 척결 및 예방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기관·기업별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기간, 언어, 장소 등에 대해 사전 의견 조율을 거쳐 프로그램 마련

<권익위 대상 교육(사례)>

커리큘럼	교육기간	교육생
○ 공공분야 청렴도 및 정치 부패, 부패예방, 국가 및 국제 우수사례 소개 ○ 비엔나 소재 국제기구 및 반부패 기관 방문	'13.11.19 - 21	6명
	'14.8.28 - 9.3	26명
	'15.6.10~18	26명
	'16.4.20~28	26명

※ 자세한 내용은 IACA 홈페이지(www.iaca.int) 'Tailor-made Training' 참조

라.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홍보 및 참여 활성화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

- 국민·공직자가 청렴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공모전 개최

- 각 분야별 입선 이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 수여

<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요 >

1차 공모 (6~8월)	사연·수기	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변화된 국민, 공직자들의 일상생활 이야기 ② 가정, 학교, 직장 등 일상에서 경험한 청렴 및 양심 관련 사연·수기
-----------------	-------	---



2차 공모 (8~11월)	콘텐츠	사연·수기 우수작을 영상물, 웹툰 등으로 재생산
	독후감	사연·수기 우수작 독후감 공모를 통해 확산

* 세부 일정 및 분야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 공문 참조

□ 국민·공직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의미있는 반부패·청렴사례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 대상 포스터 배포, SNS 활용 등 다각적 홍보 실시

[협조 요청 사항]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적극적 홍보 협조(전 공공기관)
 - 각급 공공기관 인터넷 및 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에 공모전 안내 배너 설치, 청사 내 게시판 등에 포스터 부착 등
 - 양질의 사례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해 소속직원·국민 참여 유도
- ※ 세부 계획 및 홍보 협조사항 등은 추후 별도 안내

6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이첩사건 관리 강화

- ◇ 내부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맞춤형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이첩사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가. 부패(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함), 공익신고 활성화

□ 내부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 참여 유도

- 신고의 파급력이 큰 목표(Target) 분야를 선정한 후 조직 내부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집중 홍보 실시

< 내부 신고 집중 홍보 대상(예시) >

- ◆ 부실시공 및 공사비 편취 : 건설기술자, 현장 근로자, 건축주 등
- ◆ 연구비 횡령 : 교수, 대학(원)생, 교직원, 기업체 임직원 등
- ◆ 제약비리 : 제약회사 제품개발자, 영업사원, 재무담당자 등
- ◆ 불량급식 : 식재료 납품업체 직원, 영양사·조리사, 급식업체 직원 등
- ◆ 유해 화장품 : 원재료 공급업체 직원, 제품개발자 등

- 각급 기관(산하기관 포함)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정 의무교육, 직업 훈련 교육기관 등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콘텐츠 반영

※ (예시) 국토부와 협조하여 건설기술교육원 등 13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술자(약 43만명) 의무교육 시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교육

□ 부패·공익침해 신고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R&D 사업 시행자, 보조금 사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교육 및 홍보 실시

※ 기관별 보조금 사업설명회 등에 참석한 사업담당자 대상 부정수급 사례 교육 실시 및 신고센터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 배포

- 공익신고가 미진한 신규 대상 법률(99개)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교육 및 온라인 홍보 실시
 - ※ (예시) 「주택법」 신고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지자체 주택과, LH공사, 한국주택협회 등에 사례 중심의 교육·안내자료 배포, 홈페이지 배너 게시

< 신규 대상 법률 관련 공익침해행위 유형(예시) >

-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위반, 불법 전매, 공동주택성능등급 허위 표시 등
- ◆ 「학교급식법」 : 급식 원산지 허위표기, 위생불량 등
- ◆ 「은행법」 : 예금강요 등 불공정영업행위, 불법 대출, 불법 광고 등
-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등

-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부패·공익신고 보호·보상 우수사례를 발굴·전파
 - ※ (사례)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신고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보복행위를 하였으나, 위원회가 3차례 보호조치로 신고자 보호 관철

[협조 요청 사항]

- 각급 기관 법정 의무교육 등에 신고자 보호 제도 콘텐츠 반영(해당기관)
 - ※ 교육 콘텐츠는 권익위에서 제작·제공, 해당 기관에 별도 협조요청 예정
- 복지·보조금 관련 사업설명회 등 개최 시 부정수급 사례 교육 실시 및 홍보물 배포 협조(해당기관)
 - ※ 강사 지원요청 시 적극 지원 예정, 홍보물은 권익위 홈페이지 게시자료 활용
- 국민생활 밀접 분야 이해관계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교육·홍보 및 기관 홈페이지에 공익신고 배너 게시 협조(해당기관)
 - ※ 교육 콘텐츠는 권익위에서 제작·제공, 해당 기관에 별도 협조요청 예정
- 공익신고 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시 자료제출 협조(해당기관, 2·8월)
- 각급기관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보호·보상 사례 전파,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안내, 배너 연계 등 홍보 협조(전 공공기관)
 - ※ 홍보요청에 대한 홍보실적 결과를 시책평가에 반영 검토

나. 부패(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함), 공익신고 이첩사건 관리 강화

□ 이첩사건 처리 현황에 대한 관리 강화

○ 부패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의 임의적 재이첩 방지

- 조사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권익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타기관으로 재이첩

※ 권익위와 사전협의 없이 재이첩하거나 업무 담당자가 아니면서 이첩문서를 열람, 복사, 송부 시 신고자의 신분 노출 등 발생 우려

○ 이첩사건 조사 결과 장기 미통보 사건에 대한 관리 내실화

- 장기 미처리 된 이첩 사유를 분석, 미처리 빈발 기관에 대한 신고 사건 처리현황 등 확인

□ 무혐의 사건에 대한 재조사·재수사 요구 등 적극 활용

○ 무혐의 사건에 대한 설명요구, 구체적 사유 제출 등을 통해 조사 기관의 자율적 재조사·재검토 유도

- 감독기관의 경우 수사기관의 내사종결이나 불기소 처분만을 이유로 자체조사 없이 종결할 수 없음

※ 전문가 자문 등 조사 종결의 타당한 사유를 적시하여 제출

- 무혐의 사유 등을 분석하여 부실 조사·수사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재조사·재수사 요구

[협조 요청 사항]

- 이첩사건 처리 현황에 대한 관리 강화(해당기관)
 - 부패·공익 신고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법정기일이 있는 부패 신고의 경우 기일 도과 시 연장사유, 기간을 권익위에 사전 통보
 - 조사기관이 신고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재이첩 필요시 권익위와 사전 협의
 - 이첩사건 조사결과는 실질적·최종적인 내용 제출
 - ※ 징계 등 신분조치, 환수·감액 등 예산조치 결과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통보하고 사후 조치가 남아 있는 경우는 조사결과로 접수 불가
 - 형사 고발 혐의 발견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등 병행
- 장기 미처리 이첩 사건 관리 협조(해당기관)
 - 부패신고는 6개월 이상, 공익신고는 1년 이상 최종 조사결과 미통보 사건에 대하여 반기별로 확인
 - 수사·소송 등으로 조사 지연사건에 대해 수사 및 민·형사, 행정 소송 진행상황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여 권익위에 통보
- 무혐의로 조사를 종결할 경우 구체적 근거와 사유 제출(해당기관)

7

신고자 불이익 조치 예방 강화 및 보·포상금 지급 확대

- ◇ 신고자 보호 제도의 엄격한 운영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보상금·포상금 등 신고자 인센티브 활성화

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 예방 강화

- 부패, 복지·보조금,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보호
 - 신고자 색출, 인적사항 공개 등 신분노출 행위를 신고 접수·처리단계부터 철저히 근절
 - 익명신고의 경우에도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피신고자에게 신고 내용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 금지
 - ※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4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분이 노출된 경우 불이익 조치로 연결되지 않도록 신고자 및 잠재적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보호제도 안내 등 선제적 대응 강화
 - ※ 신고자에 대해 보호제도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잠재적 불이익 조치자에 대해 위반 항목별 처벌규정·사례 등을 안내
- 공익신고자 보호
 - 각급 공익신고 접수·처리 기관에 철저한 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유의사항 전파 및 준수 협조요청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활성화

- 보호조치 신청인·피신청기관 간 화해 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이익 상황에 대한 조기해결 유도

□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공동 추진사항

- 신고자를 대상으로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
-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적극 실시
 - ※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해 징계, 고발조치 등
- 신고자 보호 노력도와 시책평가 결과의 연계를 통해 보호 규정 위반 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 신고자 색출, 신고자에 대한 신분 노출, 신고자 보호 관련 권익위 요구 불이행 등에 대한 감점 확대 추진
- 신분보장 요구자에 대한 불이익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불이익 조치 기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마련 유도

[협조 요청 사항]

- 부패, 복지·보조금,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보호 (전 공공기관)
 - 신고자 색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교육 및 신고 접수·처리 단계별 유의사항 전파 및 이행사항 관리(참고2)
 - 신분이 노출된 경우 불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보호제도 안내 등 신고자 및 잠재적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집중 관리

[협조 요청 사항]

- 공익신고자 보호(공익신고 접수·처리기관)
 - 각급 기관 부서별 소관 공익신고 대상법률 파악 및 신고 접수·처리 단계별 유의사항 전파 및 이행사항 관리(참고2)
 - ※ 관련 협조요청 공문 및 참고자료는 권익위에서 별도 통보
- 신고자 보호 공통(전 공공기관)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
 - ※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 리플릿, 청탁금지법 브로슈어, 공익신고자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의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등 활용
 -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해 고발 및 징계 등 제재조치
 - 부패, 복지·보조금, 공익 등 신고자 보호 관련 권익위 요구 협조

참고 1	신고에 따른 보호 조치 비교
-------------	------------------------

구분	부패, 행동강령, 복지·보조금 신고	청탁금지법 신고	공익신고
근거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신고방해 등	-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	
신분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 금지	<좌동>	
불이익 조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면, 징계, 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 - 성과평가 차별, 집단 따돌림 등 근무조건상 불이익 -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 물품계약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불이익 추정	원상회복 등 요구 및 관련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자 색출 및 신고 방해 - 공익신고 후 2년 이내 불이익 조치 -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후 불이익 조치 	
신분보장 등 (원상회복요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익 처분 절차의 일시 정지 -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 인사조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또는 권고 - 인사조치 요구 	
신변보호조치	신고인, 친족 또는 동거인 신변 보호	<좌동>	
책임감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 또는 징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 또는 징계 감면, 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 공익신고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배제 	
협조자 보호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가능	<좌동>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밀보장 위반 : 징계요구 * 신변보호대상자 유출 시 형사처벌 ② 불이익 조치자 : 징계요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③ 불이익 처분 절차 일시정지 미이행 : 형사처벌 ④ 불이익 조치 미이행 : 형사처벌 ⑤ 자료제출·진술·조회요구 불응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고 방해, 취소 강요 금지 위반 : 형사처벌 ② 비밀보장 위반 : 형사처벌 ③ 불이익 조치자 : 형사처벌 ④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미이행 : 이행강제금 ⑤ 불이익 조치 미이행 : 형사처벌, 이행 강제금 ⑥ 자료제출·진술·조회요구 불응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 단계

○ 신고 접수 시 신분공개 동의 여부 반드시 확인

- 신분공개 부동의시 신고자 및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에 관한 노출·공개·보도 금지
- 신고자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
- ※ 공익신고의 경우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됨.

○ 신고자에게 언론제보, 직장계시판 게재 등으로 신고내용이 공론화되는 경우 피신고자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피소 우려가 있음을 안내

○ 피신고자가 신고자인 것처럼 가장한 전화문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 접수 후 전화응대 등 관리 주의

□ 신고 사건 심사 및 조사 단계

<신고 사건 관리>

- 신고 사건은 업무담당자와 결재권자만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모두 별도 관리
- 신고내용만으로 신고자 신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신고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관리 철저

<현장조사>

- 현장 조사 시 신고서 등 서류를 복사·휴대 시 신분노출 우려로 조사관만이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요약해서 참조
- 관련자 조사 시 노트북 및 휴대용 프린터를 사용하되, 부득이 관련 기관 장비 사용시 컴퓨터 사용내역 삭제, 자료 파쇄 등 보안에 유의

○ 조사를 위한 공문 발송 및 기관 방문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신고 관련 공문 등 작성 시 대국민 공개 등으로 작성하여 업무 담당자 외에 신고 사건 검색·열람으로 신고자 신분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 기관 방문 시 신고자 보호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여 신고 내용이 사전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신고자 안내·연락>

○ 신고자가 처리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처리결과를 속단하여 언론기관 등에 제보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므로 처리상황을 주기적으로 통보

○ 신고자에게 연락 시 사무실 전화가 아닌 휴대폰으로 가급적 근무시간 외에 연락하고, 조사결과 통지 등은 직장이 아닌 신고자 자택으로 발송

○ 신고자에 대한 신변 위협, 불이익 조치 사실(불이익 우려 포함)을 알게 된 경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 신고 사건 이첩, 송부 시 유의 사항

○ 신고자 요청 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원관리카드 열람 제한 등 조치

※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7조, 제9조에서 제12조 준용

○ 신분공개 부동의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시 신고자 성명 및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삭제 처리

□ 신고사건 사후관리 단계

○ 신고 처리결과 통지 시 신고자에게 보호제도 안내문 제공

○ 신고사건 종료 후에도 신고사건 기록물 등에 대한 열람 제한 등 철저한 관리 실시

나. 보상금·포상금 지급 확대로 신고자 만족도 제고

□ 원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적기 재원확보 추진

- 예산부족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보상금 예비사건*** 수요조사 실시

* 권익위가 부패신고 등을 이첩·송부한 결과, 부패수익 환수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 확정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서 보상금 지급이 신청되지 않은 사건

- 공익신고 보상사건 관련 **상환금** 납부가 미진한 지자체 중점 관리 등 기한 내 납부 이행 확보

□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사례 적극 발굴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대상자를 수시 발굴·홍보 함으로써 신고 활성화 유도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이 내부 신고자로 제한됨에 따라 외부 신고자 중 공익증진에 기여한 사건을 적극·발굴하여 포상금 지급

[협조 요청 사항]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해당기관)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지자체 상환금 신속 상환(지자체)
- 청탁금지 및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전 공공기관)

8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법 위반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

가. 철저한 교육·홍보를 통한 위반자 발생 사전 예방

- (채용후보자) 공공기관 채용단계에서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
 - * 취업제한 위반자 대부분(93.2%)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여 발생
- 공공기관 채용공고문 등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을 명시
- 공공기관 인사담당자가 채용후보자의 비위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시스템'을 확대·시행
 - ※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시스템 운영계획 및 세부방법은 추후 통보 예정
- (현직공직자) 교육·홍보 등을 통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인지도 제고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배포
 - 공직유관단체의 정관,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의 결격사유에 취업제한 규정 반영

< 정관, 인사규정 결격사유(예시) >

제0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비위면직자) 비위면직에 대한 개별적 취업제한제도 안내 강화

- 징계 원인이 부패행위가 아닌 경우(예시 : 음주음전, 폭력 등)에는 취업제한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도록 주의

※ 취업제한 위반으로 해임, 고발 조치된 비위면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을 상대로 제도 미안내에 따른 소송 등 문제제기 가능성 상존

[협조 요청 사항]

- 공공기관 채용공고문의 응시자격, 공직유관단체 정관·인사규정의 결격사유 등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사항을 명시(전 공공기관)
※ 비위면직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제도 교육·홍보 협조(전 공공기관)
※ 기 배포된 안내문 및 청렴연수원 표준강의안, 사이버 청렴교육 등 활용
- 소속 직원이 취업제한 대상자가 된 경우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를 개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전 공공기관)

나. 강화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현황 실태점검

□ 비위면직자 명단에 대한 관리 강화

- 비위면직자 명단을 공문으로 취합, 범죄경력 자료 등을 통해 검증하여 명단 누락 기관에 과태료 부과(500만원) 등 불이익 조치

□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확대에 따라 철저한 업무관련성 검토 실시

[협조 요청 사항]

- 비위면직자 명단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 협조(전 공공기관, 2·8월)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따른 검토 협조(해당기관)

구 분	기 존	개 정 사 항
적용 대상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적용대상자 - (확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었던 자
취업제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 <u>퇴직 전 3년간</u> 소속 하였던 <u>부서</u>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u>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u> 및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 (신설) 부패행위 관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 부패행위로 직접 이익을 얻은 기관 - (확대) <u>퇴직 전 5년간</u>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및 협회 <p>* 법무·회계·세무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p>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소속(관할) 부서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고위 공직자는 기관 전체의 업무로 판단
자료 요구권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 범죄경력자료, 비위면직자등의 인적 사항 및 징계사항, 공무원·군인연금 급여제한자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 기타소득세 자료
위반시 제재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제한 위반자 해임요구 및 자료요구를 거부한 기관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 · 해임요구 거부(1천만원) · 자료요구 거부(2백만원 ~ 5백만원)



[붙임 자료]

1. 기관별 협조사항 요약
2. 분야별 업무담당자
3. 제도개선 관련 서식



붙임 1 기관별 협조사항 요약

협 조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 반부패 인프라 공고화			
□ 청렴정책 추진동력으로서 「청탁금지법」 정착			
①	각급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참석	상·하반기 (별도 안내)	전 공공기관
②	유권해석 요청 및 상담 창구 이용 협조 ▶ 유권해석 요청 : 청탁방지담당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청탁금지해석과로 요청 ▶ 유선 상담 : 기관유형별 전담 헬프데스크 문의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소속 공직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10월	전 공공기관
④	청탁금지법 운영 현황 실태조사 협조	상·하반기 (별도 안내)	전 공공기관
□ 실천규범으로서 공직자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			
①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 사항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반영	제·개정 즉시	전 공공기관
②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시 자료제출·현장점검 등 협조	연중	해당 공공기관
③	'17년 신규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참석	3월/9월	해당 공공기관
④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시 권익위에 통보	연중	전 공공기관
⑤	행동강령 운영 관련 권익위에 상담·협의 등 요청	연중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도 확립			
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정 사항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반영	제정 즉시	지방의회
②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 제정 컨설팅 수요 제출	7월	해당 의회
2. 법·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input type="checkbox"/>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①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등 기한내 제출	연중	전 공공기관
②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사용 협조	3~4월 이후 (별도 안내)	전 공공기관
③	이행실적 미흡기관 컨설팅 수요 제출	5월	해당 공공기관
④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업무과정에 적극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발굴·정비			
①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업무수행 시 자료제출 등 협조	연중	해당 공공기관
②	소관 법령 제·개정 시 입법예고와 동시에 부패 영향평가 통보	연중	중앙행정기관
③	제·개정 조례·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가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권익위로 부패영향평가 의뢰	연중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④	부패영향평가 컨설팅을 위한 자료 제출 협조	연중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⑤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 이행점검 협조	연중	해당 공공기관
3. 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적 개선노력 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에 대한 반부패 진단·평가 강화			
①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실적 제출	3.17(금)	청렴도·시책 평가 대상기관
②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실무 담당자 워크숍 참석	3월	청렴도·시책 평가 대상기관
③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통보에 따른 자료 및 의견 제출	3월~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④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통보에 따른 대상명부 등 제출	6월~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⑤	'1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담당자 해외 반부패 교육훈련 참가	5월 (별도 안내)	해당 기관
⑥	'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관별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서 제출	4월/10월	시책평가 대상기관
<input type="checkbox"/> 청렴컨설팅을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①	청렴컨설팅 신청서 제출	2.10(금)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②	반부패 추진역량 진단과 대안 마련 등 컨설팅 과정에 적극 협조	연중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③	기관장·부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컨설팅 정책 협의회 개최 협조	연중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4.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에 따른 지원·협력체계 확립			
①	사이버 코스웨어 등 청렴교육 콘텐츠 활용	연중	전 공공기관
②	'16년도 청렴교육실적 및 '17년도 교육운영계획 제출	2월	전 공공기관
③	청렴교육 점검 결과의 기관평가 반영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상반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 청렴교육 내실화로 공직자 청렴역량 강화			
①	'청렴교육 강사양성과정' 교육신청	연중	전 공공기관
②	청렴교육강사를 활용한 기관별 자체 청렴교육 운영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청렴교육 강의경연대회' 참여 협조	별도 안내	전 공공기관
④	소속 직원에 대한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공지	연중	전 공공기관
5. 청렴 거버넌스 구축으로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 확산			
□ 지역·시민사회와 반부패 네트워크 활성화			
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내실화 노력	연중	전 공공기관
②	지역 반부패 민·관 네트워크 구축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청렴 클러스터' 구축·운영 협조	연중	혁신도시 이전 기관,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및 교육청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 기업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 지원			
①	협력사, 계약 상대방 등 유관 민간기업 대상 '기업 반부패 가이드' 안내 및 활용 독려	연중	전 공공기관
②	기업윤리의 날 행사 등 청렴문화 실천운동 적극 참여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사내 교육시 '기업윤리 브리프스' 및 '기업윤리 e-러닝센터' 제공 콘텐츠 활용	연중	공직유관단체
□ 반부패 국제 공조 동참 및 국제 홍보			
①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	11월	전 공공기관
②	UN반부패협약 이행심사,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관계부처 회의 참석 협조	연중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행자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③	외국공무원 대상 반부패 관련 강의 및 관계기관 방문 시 협조	연중	인사혁신처, 법무부, 대검찰청, 조달청, 관세청 등
④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교육 프로그램 참여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⑤	국제사회 홍보용 기관별 반부패 우수시책 제공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홍보 및 참여 활성화			
①	각급 공공기관 인터넷 및 인트라넷 홈페이지, 청사 내 게시판 등을 활용한 홍보 협조	별도 안내	전 공공기관
②	소속 직원 등의 공모전 참여 유도	별도 안내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6.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이첩사건 관리 강화			
<input type="checkbox"/> 부패(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함), 공익신고 활성화			
①	각급 기관 법정 의무교육 등에 신고자 보호 제도 콘텐츠 반영	연중	해당 공공기관
②	복지·보조금 관련 사업설명회 등 개최 시 부정수급 사례 교육실시 및 홍보물 배포 협조	연중	해당 공공기관
③	국민생활 밀접 분야 이해관계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교육·홍보 및 기관 홈페이지에 공익신고 배너 게시 협조	연중	해당 공공기관
④	공익신고 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시 자료제출 협조	2월/8월	해당 공공기관
⑤	각급기관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한 보호·보상 사례 전파,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배너 연계 등 홍보	연중	전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부패(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함), 공익신고 이첩사건 관리 강화			
①	부패, 공익신고 이첩사건 신속 처리	연중	해당 공공기관
②	법정기일이 있는 부패신고의 경우 기일 도과 시 연장사유, 기간을 권익위에 사전 통보	연중	해당 공공기관
③	재이첩 필요시 권익위와 사전 협의, 이첩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조사결과 제출	연중	해당 공공기관
④	장기 미처리 이첩 사건 관리 협조	연중	해당 공공기관
⑤	무혐의 조사 종결 시 구체적 근거와 사유 제출	연중	해당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7. 신고자 불이익 조치 예방 강화 및 보·포상금 지급 확대			
<input type="checkbox"/>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 예방 강화			
①	소속 직원 교육 및 신고 접수·처리 단계별 유의사항 전파 및 이행사항 점검	연중	전 공공기관
②	보호제도 안내 등 신고자 및 잠재적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집중 관리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소관 공익신고 대상법률 파악, 신고 접수·처리 단계별 유의사항 전파 및 이행사항 관리	연중	전 공공기관
④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	연중	전 공공기관
⑤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해 고발 및 징계 등 제재조치	연중	해당 공공기관
⑥	부패, 복지·보조금, 공익 등 신고자 보호 관련 권익위 요구 협조	연중	해당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보상금·포상금 지급 확대로 신고자 만족도 제고			
①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	연중	해당 공공기관
②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지자체 상환금 신속 상환	연중	지자체
③	청탁금지 및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연중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8.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input type="checkbox"/> 철저한 교육·홍보를 통한 위반자 발생 사전 예방			
①	공공기관 채용공고문의 응시자격, 공직유관단체 정관·인사규정의 결격사유 등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사항 명시	연중	전 공공기관
②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개정 제도 교육·홍보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소속 직원이 취업제한 대상자가 된 경우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를 개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	연중	전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강화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현황 실태점검			
①	비위면직자 명단 등 자료 제출 협조	2월/8월	전 공공기관
②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따른 검토 협조	연중	해당 공공기관

붙임 2

분야별 업무담당자

부서명	성명	업무명	전화번호	팩스
청렴총괄과	박주미	기업 반부패 가이드 보급·확산	044) 200-7612	044) 200-7939
	이덕희	반부패·청렴정책 총괄	044) 200-7614	
	임한나	청렴클러스터 구축	044) 200-7616	
	전진모	청렴컨설팅 추진	044) 200-7623	
	박세희	청렴교육 점검 및 각종평가 반영, 청렴교육 강사 지원	044) 200-7615	
청렴조사 평가과	손정오	총괄, 부패방지 시책평가	044) 200-7633	044) 200-7940
	방경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044) 200-7632	
	박정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044) 200-7635	
	권소현	부패방지 시책평가	044) 200-7638	
부패영향 분석과	김낙렬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농업법인)	044) 200-7659	044) 200-7941
	이주현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출연금)	044) 200-7657	
	나현성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주민지원)	044) 200-7660	
	이성섭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044) 200-7653	
	최승남	제·개정 조례·사규 부패영향평가	044) 200-7662	
	양정윤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지자체)	044) 200-7654	
	나현성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공직유관단체)	044) 200-7660	
	이진희	제·개정 및 현행 법령 권고사항 이행점검	044) 200-7655	
	최승남	사규 협업기관 권고사항 이행점검	044) 200-7662	

부서명	성명	업무명	전화번호	팩스
청탁금지제도과	정윤정	청탁금지법 기획	044) 200-7702	044) 200-7944
	주경희	청탁금지법 기획	044) 200-7703	
	박정구	청탁금지법 해설서·매뉴얼	044) 200-7704	
	김경용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044) 200-7705	
청탁금지해석과	권오성	청탁방지담당관 헬프데스크 ▶ 중앙행정기관 / 언론사 담당	044) 200-7642	044) 200-7960
	권기현	청탁방지담당관 헬프데스크 ▶ 광역자치단체 / 언론사 담당	044) 200-7643	
	이범석	청탁방지담당관 헬프데스크 ▶ 교육청 / 학교 담당	044) 200-7647	
	강주형	청탁방지담당관 헬프데스크 ▶ 기초자치단체 담당	044) 200-7649	
	김시형	청탁방지담당관 헬프데스크 ▶ 기초자치단체 담당	044) 200-7648	
	장성규	청탁방지담당관 헬프데스크 ▶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담당	044) 200-7644	
행동강령과	임채수	공직자 행동강령제도 운영 총괄	044) 200-7673	044) 200-7942
	박기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도 운영	044) 200-7676	
	한세근	공직자 행동강령제도 운영	044) 200-7681	
	정장욱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044) 200-7674	
	정나리	각급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지원	044) 200-7678	
심사기획과	조재훈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 200-7697	044) 200-7943
부패심사과	김은경	부패신고사건 사후관리	044) 200-7720	044) 200-7946

부서명	성명	업무명	전화번호	팩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센터	백수경	복지·보조금신고사건 사후관리	02) 2110-6528	02) 2110-0678
	고채림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홍보	02) 2110-6527	
보호보상과	원현심	신고자 보상·포상 업무	044) 200-7743	044) 200-7947
	김동현		044) 200-7739	
	이덕진		044) 200-7744	
	현순정		044) 200-7745	
	권문택	신고자 보호업무(부패, 복지·보조금,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044) 200-7747	
	서정화		044) 200-7748	
	전이슬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교육	044) 200-7742	
	박태진		044) 200-7740	
공익심사 정책과	정은수	공익신고 정책 총괄	044) 200-7752	044) 200-7948
	안문주	공익신고 사건 등 총괄	044) 200-7753	
	장은경	공익신고 제도 관련 민간·국제 협력	044) 200-7754	
	이유경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홍보	044) 200-7757	
공익보호 지원과	김기창	공익신고 보·포상금 업무 총괄	044) 200-7775	044) 200-7949
	윤선호	공익신고 보상금 업무	044) 200-7773	
	한희선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044) 200-7772	
	나조운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044) 200-7773	

부서명	성명	업무명	전화번호	팩스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정진덕	사이버 청렴교육 운영 및 사이버 코스웨어 제공	043) 901-6131	043) 901-6203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정대우	청렴교육강사 제도 운영 청렴집합교육 총괄	043) 901-6124	043) 901-6202
	안채리	청렴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 청렴역량 강화과정 운영	043) 901-6123	
	박중하	청렴교육 일정 협의	043) 901-6126	
	이준	청렴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 청렴교육 콘텐츠 총괄	043) 901-6125	
	조효민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운영	043) 901-6137	
제도개선 총괄과	최명식	제도개선 기획총괄	044) 200-7212	044) 200-7921
	장호성	제도개선 사후관리	044) 200-7218	
국제교류 담당관	전수연	ADB/OECD 컨퍼런스, G20반부패 실무그룹, OECD뇌물방지협약	044) 200-7152	044) 200-7916
	윤소영	반부패 기술지원, UN반부패협약, 홍보용 우수시책	044) 200-7153	
	강미영	국제반부패아카데미	044) 200-7155	
민간협력 담당관	한건희	반부패 민·관 네트워크 지원	044) 200-7164	044) 200-7917
	강병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044) 200-7165	
	김연주	기업윤리의 날 운영, 기업윤리 브리 프스 발간, e-러닝센터 운영	044) 200-7166	

붙임 3 제도개선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예시.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 제도개선)

과제내용		관련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1			○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2				
3				

[별지 제2호 서식]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예시.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 제도개선)

최종작성일	
과 제 명	
조치시한	

소관부처	
기관명·부서명	
담 당 자	
연락처·메일	

이행상황
기한 미도래 이행중 · 이행완료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MEMO ■

■ MEMO ■

■ MEMO ■

■ MEMO ■

■ MEMO ■

■ MEMO ■